

동작구의회공고 제2020-4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기계발, 심신안정을 위한 휴식을 통해 활기찬 근무환경을 조성하면 창의적·능동적 행정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바, 공무원의 생일월(月)에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 남성 공무원에게 3일의 휴가를 부여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연가 사용 권장 기간 수정(안 제20조의2)
- 나. 공가 범위의 확대: 공무원노동조합의 대의원회 참석 등(안 제23조)
- 다. 특별휴가 범위의 확대: 유산·사산 휴가 개정, 생일월(月) 휴가(안 제24조)
- 라.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휴가 특례 규정 신설(안 제26조, 별표 6)
- 마. 연가의 저축 및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의 사용 보장(안 제27조, 제2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법””을 ““법””으로,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3조 중 “주민전체”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전체”로, “성실로써 맡은 바”를 “성실로 맡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를 각각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사항으로서”를 “사항으로써”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주민”을 “구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획득하기에 노력 하여야”를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직근무자와”를 “당직 및”으로, “이외”를 “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 이)”를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귀청하였”을 “복귀하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점임 근무하는”을 “점임근무하는”으로, “원 소속 기관”을 “본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점임 근무하는”을 “점임 근무하는”으로, “원 소속기관”을 “본직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30조의4”를 “법 제30조의4”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과견 근무하는”을 각각 “과견근무하는”으로, 같은 항 중 “원 소속기관”을 “본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를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을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으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를 “공무원의 근무에”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직무의 성질, 지역”을 “직무성질·근무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하”를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안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이하”를 “이하”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 시간과 근무일)”을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연가일수는 다음과”를 “연가 일수는 다음 표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별표4”를 “별표 4”로, “연가일수”를 “연가 일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직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를 “결근·휴직·정직·직위해제 및 강등”으로, “연가일수”를 “연가 일수”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공무원의 연가가”를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으로,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의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을 “치우치지 아니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구청장은 소속”을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구청장은 소속”을 “구청장은”으로,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를 “공무원이 그 해”로,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해야”를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권장 연가 일수 미사용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등을 정해 공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속”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로, 같은 호 및 제2호 중 “소속 공무원이”를 각각 “공무원이”로, 같은 호 중 “9월 30일”을 “10월 31일”로, “소속 공무원에게”를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를 “(연가 일수에서의 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강등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연가일수”를 “연가 일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를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로,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폐직·과원”을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으로, “경우(구청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연가 일수”를 각각 “연가 일수”로 한다.

6.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기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연가일수”를 “연가 일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인하여 직무”를 “직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감염병으로 인하여”를 “감염병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요하는”을 “필요로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7일 이상일”을 “6일을 초과하는”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응하거”를 “따르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외국어 능력

시험”을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교섭 위원”을 “교섭위원”으로, “참석”을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을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그 밖에 정부지침에 따라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 제24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4조 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일”을 “1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의 후단 중 “모성 보호시간”을 “모성보호시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를 “구청장은 유산하거나 사산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임신기간이 12주 이상”을 “임신기간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 중 “연가일수”를 “연가 일수”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중전의 제11항) 중 “특별 휴가”를 “특별휴가”로 한다.

⑧ 구청장은 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제15항(중전의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명”을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등” 이”를 “등”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건강보호법」 제5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에 해당하는 월에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 단서 중 “휴가일수가”를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로 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제31조 및 제32조로 하고,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제29조 및 제30조로 하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16조 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 제24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다.

제27조(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

·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22조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제28조(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이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원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8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1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삽입한다.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휴가 기준(제26조 관련)

1.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가. 구청장은 토요일, 공휴일 또는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이하 "토요일등"이라 한다)에 근무를 한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나. 토요일등에 근무를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휴가일수 계산 등

가. 휴가일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 휴가기간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3. 연가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이 연도 중 변경된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같은 기간별로 비례하여 계산한 연가시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frac{\text{제19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가에서 뺀다.

다. 제4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가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권장 연가 시간은 구청장이 정하는 권장 연가 일수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

4. 병가

가. 병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

나. 가목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이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3호다목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5. 특별휴가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권 보장시간을 받을 수 있다.

나.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6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u>정함</u>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규정함</u> ----- -----.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이하 ‘ <u>공무원</u> ’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 <u>법</u> ’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 <u>구청장</u> ’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 ----- “ <u>공무원</u> ”----- ----- “ <u>법</u> ”----- ----- ----- “ <u>구청장</u> ”----- -----.
② 제1항의 선서는 <u>별표1</u>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② ----- <u>별표 1</u> ----- -----.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u>별표 2</u> 와 같이 한다.	③ ----- <u>별표 2</u> -----.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u>주민전체</u> 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u>성실로써 맡은 바</u>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완수) ----- <u>서울특별시 동작구민</u> (이하 “ <u>구민</u> ”이라 한다) <u>전체</u> ----- ----- <u>성실로 맡은</u> ----- -----.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	제4조(비밀엄수)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생략)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생략)

② 공무원은 별표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

--- 다른 사람---

1. (현행과 같음)

2. ---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되면 ---

3. ---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되면 ---

4. --- 사항으로써 ---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별표 3 ---.

제6조(친절·공정) ① ---

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
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
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
· 숙직·방호원 등의 당직근무
자와 비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당직 및 비상근무자에게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직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
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
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 구민-----

② -----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

----- 당직 및 -

----- 외-----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범위-----

----- 필요-----

제9조(출장공무원) ① ----- 명

에 따라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

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이하 “출장공무원”이-----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② (생략)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 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복귀하였-----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겸임근무) ① -----
----- 겸임근무하는 -----
----- 본직기관-----
-----.

-----.

② 겸임근무하는 -----

----- 본직기관-----
-----.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 4----- 파견근무하는 -----

그 파견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제13조(복장 및 제복) ① (생략)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用に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략)

제14조(근무시간 등) ①·② (생

-----.

② ----- 파견근무하는

----- 본직기관-----
-----.

③ -----

-----.
----- 공무원-----

-----.

제13조(복장 및 제복)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필요한 사항은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근무시간 등) ①·② (현

략)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근무시간 등의 변경과 연장) ①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바꾸거나 늘릴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구청장에게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행과 같음)

③ ----- 필요-----
-----.

④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 공무원의 근무에

-----.

제15조(근무시간 등의 변경과 연장) ① ----- 직무성질·근무 지역 -----

-----.

② -----

-----이하-----
-----.

③ -----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
다.

제16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편의 또는 공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제14조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공휴일(이하“공휴일”이라 한다)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7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 시간과 근무일) (생략)

제19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별표4에 따라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 안 된
다.

제16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

이하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
과 근무일) (현행과 같음)

제19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지급) ① -----
연가 일수는 다음 표와 -----
-----.

-- 별표 4-----
----- 연가 일수-----
-----.

① ~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
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
한 재직 기간을 말하며, 휴직기
간 · 정직기간 ·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
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
한다.

1. ~ 3. (생략)

③ 해당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 2. (생략)

④ (생략)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
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

① ~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직기간

1. ~ 3. (현행과 같음)

③ ----- 결근 · 휴직 · 정
직 · 직위해제 및 강등 -----

----- 연가 일
수-----.

1.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
 를 사용하여 직무 생산성을 높

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의 생신
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
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 ③ (생 략)

④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
터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
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삭 제

⑥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
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
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
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
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
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
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해야 한다.

일 수 있도록 --- 치우치지 아
니하게 -----

---.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공무원-----

-----.

⑥ 구청장은 -----

-----.

제20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①
구청장은 -----

----- 공무원이 그 해 -----
----- 10
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권
장 연가 일수 미사용에 대한 연
가보상비 지급 여부 등을 정해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청장은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 · 정직일수 · 직위해제

공지하여야 ---.

② -----
----- 공무원-----

-----.

1. -----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

----- 공
무원이 -----

2. 공무원이 -----

----- 10월 31일-----

----- 공
무원에게 -----

제21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단서신설 2019.4.11.>

② (생략)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생략)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구청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 강등 처분-----

-- 연가 일수----- .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
교육훈련

5. -----
-----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 경우. 다만, 구청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④ ~ ⑥ (생 략)

⑦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병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모두 더하여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으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6.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기간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 연가 일수-----
---. -----
----- 연가 일수-----
-----.

제22조(병가) ① ----- 공무원-----

-----.

--- 연가 일수-----

-----.

1. ----- 직무-----

2. 감염병으로 -----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
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
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
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
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가) 구청장은 소속공무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적으
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
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
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 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 4. (생략)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
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
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
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
을 받을 때

6. (생략)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

② ----- 공무원-----

----- 필요

로 하는 -----

-----.

③ ----- 6일을 초과하는---

-----.

제23조(공가) ----- 공무원---

-----.

1. -----

----- 따르거-----

2. ~ 4. (현행과 같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른 건

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결핵예방

법」 제11조제1항-----

6. (현행과 같음)

7. -----

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9. (생략)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 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 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신설>

-----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

8.·9. (현행과 같음)

10. -----

----- 교섭위원-----

-----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 -----

--

12. 그 밖에 정부지침에 따라 행

	<u>정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u>
	<u>때</u>
제24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u>소</u>	제24조(특별휴가) ① ----- <u>공</u>
<u>속공무원</u> 이 별표 5에 따른 경조	<u>무원</u> -----
사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	-----
여야 한다.	-----.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② -----
전후로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
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
에는 60일) 이상 되도록 해야	-----
한다. 단, 임신 중인 공무원이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	-----
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	-----
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	-----
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	-----
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	-----
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
한다.	---.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1. -----
(「모자보건법」 <u>제14조 제1</u>	----- <u>제14조제1항</u> -
<u>항</u>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	-----
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	-----

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에 있는 경우

2.·3. (생략)

③ ~ ⑤ (생략)

⑥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⑦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

2.·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일 -----
-----.

-----.
-----모성보호
시간 -----

-----.

⑦ 구청장은 유산하거나 사산한 -----

-----.

<삭제>

2. 임신기간이 -----

한 날부터 10일까지

3. ~ 5. (생략)

<신설>

⑧ (생략)

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9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생략)

⑪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⑫·⑬ (생략)

⑭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3. ~ 5. (현행과 같음)

⑧ 구청장은 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⑩ -----

연가 일수-----

-----.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⑫ -----

----- 특별휴가-----

-----.

⑬·⑭ (현행 제12항 및 제13항과 같음)

⑮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
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
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
른 유치원, 「초·중등교육
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
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
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
녀의 병원진료(「국민건강보
호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
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
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신 설>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
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
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

----- 2명 -----

-----.

1. -----

-- 유치원, 「초·중등교육
법」 제2조 -----
----- 등”이-----

2. -----

----- 「국민건강보
호법」 제52조-----
--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⑯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에 해
당하는 월에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
는 공휴일) -----

-----.

연

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신 설>

<신 설>

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

-----.

제26조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 제24조제5항부터 제9항(중전의 제8항)까지, 제25조에
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다.

제27조(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신 설>

연가 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22조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제28조(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

<u>제26조</u> · <u>제27조</u> (생략) <u>제4장 보칙</u> <u><신설></u> <u>제28조</u> · <u>제29조</u> (생략)	<u>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u> <u>제29조</u> · <u>제30조</u> (현행 제26조 및 제27조와 같음) <u><삭제></u> <u>제4장 보칙</u> <u>제31조</u> · <u>제32조</u> (현행 제28조 및 제29조와 같음)
---	--